

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8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2. 개정이유

- 매년 증가하는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구체화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현행 훈령에 맞게 인용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함(안 제2조)
- 나.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다. 민원인의 폭언·폭행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겪은 공무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를 2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함(안 별표)

4. 자치법규안 : 파주시 홈페이지(<http://www.paju.go.kr>)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5. 의견제출

- 가. 제출기일 : 2026년 10월 28일까지(20일간)
- 나. 제출방법 : 서면 · 우편 · 팩스 등
- 다. 기재내용 : 성명 · 주소 · 생년월일 · 연락처 · 의견
- 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청(민원여권과 종합민원팀)
 -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, 파주시청 민원여권과(우 10932)
 - 전화 : 031)940-4181 / Fax 031)940-4189 / 이메일 comos324@korea.kr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 :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의견	비고